

## ▶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주관 포상수상 관련 개선 방안

### □ 문제점

- 민간단체(단체·협회, 언론사, 연구기관 등)에서는 광고수익을 노리고 신청만 하면 주는 유명무실한 상을 만들어 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남발
- 자치단체는 손쉽게 수상할 수 있는 시상에 참여하여 수상을 위해 예산을 낭비하고, 치적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부정사례 빈발

### □ 개선방안

- 민간에서 주최·주관하는 시상 응모 시 예산을 수반하는(홍보비 등)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자체 심의제도 도입
-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지침·훈령 등을 제정·운영하여 후원명칭사용 승인 협의의 내실화 도모
-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현황 통합관리 체제 구축
- 지자체에서는 민간에서 주최·주관하는 시상 응모시 후원사가 공공기관일 경우 사전에 주관기관 또는 사용승인 해당 기관으로부터 후원명칭 사용 승인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 의무화
- 수상한 것보다 높은 훈격의 상을 받은 것처럼 허위 홍보하거나 상의 영예성·대표성이 왜곡 전달될 수 있는 과장된 홍보문안 사용 제한

### □ 정책성과

- 대구광역시 등 10여개 지자체에서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취지(개선방안)를 반영하여 민간단체 주관 시상참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정·운영

# [붙임 1 : 대구광역시 민간단체 주관 시상참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민간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시상에 참여하는 경우와 각종 행사에서 대구광역시 명의의 후원명칭을 사용승인할 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 협회, 언론사, 연구기관 등 공식단체의 형태를 갖춘 조직을 말한다.
2. “후원명칭”이란 문화, 의식, 체육, 전시회, 박람회, 학술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명칭, 심벌, 로고, 브랜드, 슬로건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필요할 경우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현황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로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시가 홍보비 등 1백만원 이상의 시 예산을 수반하여 민간단체에서 주최·주관(민간단체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제외한다)하는 시상에 참여하거나 시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 제2장 민간단체 주관 시상참여

**제4조(심의·의결)** 시 본청의 담당관·과장·단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민간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시상에 참여할 때에 1백만원 이상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주최·주관하는 민간단체의 활동목적, 조직형태, 사업범위, 구성원, 정관 등의 적정성 여부
2. 주최·주관하는 민간단체 시상의 적격성 여부
3. 시상참여의 타당성 여부
4. 시상참여 관련 예산의 적정성 여부

**제5조(허위·과장 홍보 금지)** 시는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상을 받은 후 언론기관이나 현수막 등을 통하여 수상 사실에 대한 허위 광고를 하거나 상의 영예성이나 대표성이 왜곡 전달될 수 있는 홍보 문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3장 후원명칭의 사용

**제6조(사용승인 대상)** ①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로 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법률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행사 외의 행사로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여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소관부서의 지원계획 수립으로 해당 행사에 대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7조(사용승인 신청 절차)** ①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 또는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관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객관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20일 전까지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행사계획서(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 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
  3.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나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
  5. 그 밖에 후원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사용승인 기준 및 관리)** ①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1. 행사가 제6조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신청 기관 또는 단체의 건전성, 공익성, 비영리성 여부
  3. 정치적 목적, 영리목적 및 사적인 행사인지 여부
  4. 행사목적이 정부정책 또는 시의 정책과 부합하는지 여부
  5. 행사내용의 충실성, 규모 및 행사 안전대책의 적정성 여부
  6. 물품 구입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
  7. 그 밖에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심사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
- ② 소관부서의 장은 신청인에게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통보서를 신청인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익목적을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③ 소관부서의 장 및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④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사전에 소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점검)** 소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후원명칭이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되지 않도록 행사진행 과정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0조(승인취소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승인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하기 전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소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취소한 날로부터 3년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결과제출)** 소관부서는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사결과 보고서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 내용
2. 행사 세부내용 및 결과
3. 그 밖에 안전사고 유무 등 행사와 관련된 특이사항